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1. 2. 22.(월)	담당부서	원전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서기웅 과장(044-203-5320)	담 당 자	정민규 사무관(044-203-5321)

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

-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·의결 후 고시 예정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는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.22일(월), **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*** **지정**(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-216호, 2012.9.14.) **철회 관련 사항**을 **행정예고**(2.22~3.14일, 20일간)하였다.

* 천지원전 예정구역 개요 :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, 노물리, 매정리, 축산면 경정리 일원 3,242,332㎡

○ 산업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11조에 의거, **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***(위원장 : 산업부 차관) **심의·의결**을 거쳐 **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**할 예정이다.

* 전추위 구성 : 산업부 차관(위원장), 기재부·과기부·국방부·행안부·농림부·산업부·환경부·국토부·해수부·산림청·소방청 고공단(위원, 11명)

□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행정예고는 정부의 **에너지전환 정책**에 따라 사업자인 **한수원이 사업 종결을 결정**('18.6.15)하여 **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, 개발행위 제한*** 등에 따른 **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**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* 전원개발촉진법 제7조 : 예정구역內 개발행위(건축물 신·증축 포함) 금지

○ **한수원**은 **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**한 '**에너지전환로드맵**('17.10.24.)' 및 '**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**('17.12.29. 공고)' 이후,

- 자체 **이사회 의결**('18.6.15.)을 통해 **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**하였고, **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**('18.7.3.)한 바 있다.

○ **영덕군**도 산업부에 발송한 공문('17.10.26.)과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**한수원 사업 종결 결정 후 상당 기간**(2년 8개월)**이 경과**하여 **개발행위 제한** 등에 따른 **주민 애로가 지속**되고 **여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이 지연**되는 점 등을 우려하여 **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희망**해 왔다.

□ 참고로, **'12.9월 전원개발사업예정 구역**으로 지정되었던 **삼척과 영덕 2개의 신규 원전 대상지역** 중, **삼척은 '19.6월 지정 철회가 완료**되었으나, **영덕**은 **그간 지정 철회 관련 지역내 갈등, 대안사업 모색**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**지정 철회가 보류**되어 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민규 사무관(☎ 044-203-53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